

Jisung Horizon Newsletter

September 2009 Vol.2. No.9

01 법률칼럼

- 감사 선임시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강경국 변호사)

06 열려라 중국

- 최고인민법원 위약금 조정에 대한 지도의견 공포
(김혜숙 중국변호사)

08 생생러시아

-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 키르기즈스탄 편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 Vietnam LIVE!

- 환경오염과 투자제한(한승혁 호주변호사)

15 주목! 이 판례

- 관급공사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공사대금)

18 최신법령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등
-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등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 등

20 업무동향

- 지평지성, 보스톤창업투자컨소시엄 대리하여 한국자산신탁 인수 관련 법률자문 수행 중
- 지평지성, 합자회사 조선무약(술포 우항청심원 제조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대리

22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대표변호사, 일본 교토 리쓰메칸(立命館)대학 법학부 객원교수로 초빙 및 강의
- 금태섭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형사법' 강의
- 최승수 변호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誌에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게재
- 김성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유치장 유치인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장 실태 조사
- 황승화 변호사, 우리은행 초청 '부동산 PF의 법적 쟁점과 전망' 강의

25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문성호 미국변호사

26 영입인사

- 이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감사 선임시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강경국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상법 제409조 및 제542조의12에서는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때 3%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또는 그 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소위 '3% 제한 룰').

위 규정들의 취지는 감사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감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3% 제한 룰'이 현실에서 적용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위 사건들을 말아서 다루었던 입장에서 느꼈던 몇 가지의 소회를 적어 보고자 합니다.

2. 사례

(1) A회사

상장법인인 A회사는 00년 1월에 약 9%의 지분을 가진 주주 甲으로부터 사외이사 1인 및 감사 1인의 선임을 제안하는 주주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A회사는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회사로서 4대에 걸쳐 성실히 경영을 해 오고 있었기에 그 주식이 상장된 이래 소수주주들과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관계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위와 같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감사 선임 요구를 처음 접한 A회사 경영진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창업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선은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제안을 철저히 백안시하고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건과 관련한 A회사 사례는 대주주의 지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제안이 고려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감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3% 제한 룰' 때문에 주주제안 사항을 가볍게 여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영진이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주 乙 또한 자신을 비상근 감사 1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주주제안이 추가로 A회사에 접수되었기에 경영진은 더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 법무팀의 의뢰에 따라 법적 검토를 맡게 된 필자는 주주 甲이 1년여 전부터 지분을 조금씩 매집하여 오기 시작하였고, 증권컨설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과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고,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관여를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주주 乙과 주주 甲간에 상당 부분 공조와 협조가 진행되고 있을 개연성도 짐작되었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춰 감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 甲의 의사대로 사외이사 1인 및 감사 1인 선임의 안은 A회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양측은 증권거래법 소정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문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상에 게재되는 경영참고사항에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었음이 기재되고, 소수주주로부터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선임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 인해 경영권 다툼 내지 분쟁 상황으로 외부에서 인식되어 주가도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달여의 주주총회 준비작업을 끝낸 시점에서 A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에 '3% 제한 룰'이 적용되더라도 주주제안을 한 소수주주들 보다는 많은 득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주주제안을 한 소수주주들 측에서도 정기주주총회 당일 출석상황 등을 파악한 이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을 요구한 주주 甲은 자진해서 주주제안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선임안건을 포기하였고, 주주 乙이

스스로를 감사후보로 추천한 건에 대해서는 표 대결이 이루어졌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주제안을 통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주 甲의 경우, 주주제안을 한 시점 이후에도 꾸준히 A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10% 가까이 보유하게 되었고, A회사의 예상치만으로도 평균 50% 이상의 주식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고, A회사는 주주 甲과 乙이 요청한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상당한 지출이 수반되었습니다.

(2) B회사

역시 상장회사이고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나 2조원에는 못 미치는 B회사는 00년 8월에 회사의 인적 분할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B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위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B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신설되는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도 결의를 하고 분할계획서 및 분할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B회사의 이사회 결의내용이 발표된 뒤 5일 쯤 되는 날에 B회사에 감사 선임,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그리고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주주 丙의 통지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회사 분할과정에서 분할되는 자산 및 부채가 정확히 평가되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주주 丙 자신의 기본 입장은 회사 분할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주주들을 규합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만약 회사 분할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신설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추천하는 丁을 감사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회사의 담당 임원은 주주 丙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하였지만, 면담 결과 주주 丙의 실제 요구사항은 자신이 서면으로 밝힌 위 세 가지, 회계장부열람/등사, 감사선임 및 주주명부열람/등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매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B회사 역시 A회사와 마찬가지로 4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서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상당 수 되고 그 보유지분의 변동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통상 그와 유사한 자본규모의 상장법인들 보다 많이 부족해서 일부 소수주주들은 보유 물량을 장내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간혹 회사 담당자에게 호소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주 丙의 서면을 통한 요구사항들은 모두 자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은, 주주 丙이 스스로 이러한 서면을 작성하여 B회사에 통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주 丙은 회사의 분할에 대해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지만 우연히 다른 주주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 및 회계사가 상담을 요청하여 왔기에 상담을 하였고, 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주주로서 지위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한 후 그와 같은 서면이 자기의 이름으로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B회사에 통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에 통지된 주주제안 서면의 작성 변호사 및 동 서면에 감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는, 같은 해 3월에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던, B회사의 동종업 종업체인 X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안건에서 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및 감사후보자와 정확히 일치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B회사 사례는,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건은 소송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유불비로 기각되었고,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건은 주주 丙의 요청대로 회사에서 제공하였으며, 감사선임의 건은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3. 문제점

위에서 든 세 가지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양태는, (i) 소위 '3% 제한 룰'이 적용됨으로써 입법 당시의 의도대로 감사선임의 건은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 되었고, 이를 접하게 되는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 (ii) 그런데, 원래의 입법 의도인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 보다는 소수주주 자신의 경제적 목적 또는 회사 지배(M&A)에 대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iii) 감사선임의 건이 제안된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 회사 경영 및 수익 달성으로 인해 평소 주주들로부터 큰 불만이 제기된 바 없는 회사였으나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으로 인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림으로써 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가 영업 등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로부터 경영진의 관심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등입니다.

A회사의 경우, 주주 甲은 1년 여의 준비기간 동안 주식을 매집해 오면서 정기주주총회에 즈음하여 감사선임의 안건 등을 제안하여 일반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비록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주가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주주 乙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어 회사에 통지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B회사가 평소에 안고 있던 문제점인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적정 가격으로의 매각이 어렵다는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임원에게 주주제안의 철회를 전제로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감사 선임에 있어서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상법의 관련 규정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몇몇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가지고 위 규정의 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감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가지고 위 세 사례에서와 같이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기업지배력 획득 등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4. 맺는 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입법례는 그리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생각해 보면 3% 제한 룰이 타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알려지고 있는 몇몇 사례에서와 같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3% 제한 룰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주들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3% 제한 룰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위약금 조정에 대한 지도의견 공포



김혜숙 변호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금융업계와 경제영역을 벗어나 이제는 사법영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민사사건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분쟁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판 실무상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최고인민법원은 <현재 형세하에 민사·상사 계약분쟁 재판 관련 지도의견>을 공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단계 중국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약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 약정한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징벌을 목적으로 한 위약금 조항은 계약법 제114조 제2항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문제 해석2> 제29조의 조항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위약책임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2. 현 단계 국내 거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와 영향으로 말미암아 민사·상사 계약 이행 중에 위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면 신의성실, 공정 원칙에 따라 위약금의 한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사적자치로 인해 위약금의 약정이 지나치게 많이 약정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사건의 구체정황에 의해 위약으로 인한 손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실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과실, 예측이익, 당사자 계약 체결 시 지위의 강약, 약관 혹은 약관 조항을 적용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법적근거는 계약법인 바 계약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이 위약으로 인한 손실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위약금인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위약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4조 2항).

계약법 해석 관련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적당하게 인하할 것을 청구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손실을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정황, 당사자의 과실 및 예측이익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과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손실보다 30% 이상 많음을 뜻합니다.

4.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하고 위약금분쟁을 해결하고자 위약자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계약 무효 혹은 위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위약금 조정 청구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지를 주장하여야 할지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을 증거책임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약자가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이 합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한 후, 당사자가 주장하는 위약금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면 인민법원은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금에 대해 재판합니다.

지도의견은 위약금 금액의 적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증거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는바, 실제 거래에 있어서 기업들이 계약서 작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왕래 서류와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JS Horizon

(생생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 키르기즈스탄 편 -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CIS)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으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과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대상으로서 중앙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생러시아 칼럼에서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호에는 우선 키르기즈스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겠습니다.

1. 저당권

키르기즈스탄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계약을 공증하여야 하고, 공증된 저당권설정계약은 등기기관에 의무적으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우리의 저당권제도와 유사합니다. 등기기관에 저당권을 등기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다른 저당권이나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금이 피담보채무의 상황에 부족한 경우, 저당권자는 차주의 다른 일반재산으로부터 부족분을 수령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출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상환되는 즉시 대주는 등기기관에 대출약정상 차주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서면통지하여 저당권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등기기관(Управление по землеустройству и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첨부서류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가증서, 기술대장(Технический паспорт),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회사기초서류(정관, 설립계약서 등), 정부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저당권의 사적실행에 대하여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저당권법과는 달리 키르기스스탄 저당권법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에 저당권의 사적 실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계약이 등기기관에 등기된 경우 저당권의 사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예금질권

키르기스스탄의 관계법령상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금계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공증이나 관할관청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질권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질권설정계약을 담보권등록사무소(Местная залогова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онтора)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권설정계약에는 최소한 (i) 계약당사자 및 그 주소, (ii) 피담보채무의 근거계약, (iii) 담보물의 목록, 가치, 구성 및 위치, (iv) 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 및 담보물에 관한 권리, (v) 피담보채무의 금액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좌개설은행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계좌개설은행으로부터 담보권설정사실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질권설정자는 당해 예금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예금 입출금이 차단되어,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질권 역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질권설정계약에 사적 실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 담보대상예금에 대한 사적 실행이 가능합니다.

3. 지분질권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키르기즈스탄 관계법령상 허용됩니다. 예금 질권과 마찬가지로 지분질권 역시 질권설정을 위하여 공증이나 관할관청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담보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분질권 설정계약을 담보권등록사무소(Местная залогова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ая контора)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예금질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예금질권과 달리 지분질권의 경우 질권설정사실을 키르기즈스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연대보증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위한 연대보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환경오염과 투자제한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번 칼럼은 2009년 8월 호찌민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신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질문내용]

"공장 이전 허가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빈증성 소재 남떠위엔에 위치한 KCN NAM TAN UYEN 공단에 2007년 5월 공장 부지 10,000m²를 구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부 사정으로 건축을 미루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화학공장이라 더는 신규 허가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허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데 파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위 질의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법률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1)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7년에 빈증 소재 공단 내의 부지를 구입해 놓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 (2) 공단 부지 구입 당시인 2007년에는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7월에는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가?

(3) 공단 측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4)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부지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위 법률이슈에 대해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7년에 빈증 소재 공단 내의 부지를 구입해 놓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베트남 공단부지임대계약의 경우, '정식임대계약'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맺게 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기 이전에는 '가임대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투자허가가 최종 거절될 경우, 같은 프로젝트로는 동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임대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환불받고 가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비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 질의에서는 현재 '가임대계약' 상태인지, 아니면 '정식임대계약'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투자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서는 '가임대계약'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장이전이 지연되면서 공단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현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허가서 신청과 발급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단과 예비투자자 간의 부지임대에 관한 계약에 이의제기나 문제가 없다면 공단부지 자체를 holding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단부지를 확보한 뒤 2년이 지나 투자허가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단 부지 구입 당시인 2007년에는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7월에는 화학공장이라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가?

'화학공장'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투자허가서 발급이 거절되었다기보다는 생산제품, 생산방법, 생산량, 폐기물 처리방법 및 자체 폐수 처리 시설 등 예비투자자의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의 중앙폐수처리장치의 처리 능력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2008년 동나이성에 위치한 대만업체의 장기간의 폐수 불법방출 문제로 베트남 전체가 떠들썩한 이후 베트남 각 성 정부마다 각 성의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허가승인계획안'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나이성의 경우 2010년까지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환경보호를 위한 투자허가계획이 2008년 말 성인민위원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Resolution 125/2008/NQ-HDND, 2008년12월5일).

빈증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성 자체적인 투자허가에 관한 방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빈증성에 위치한 공단마다 유치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사업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공단 측에서 해당 공단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공단의 구입이란 정확하게 말해서 정부로부터 공단개발허가를 받은 공단개발자로부터 공단부지에 대한 '재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부지의 임대기간도 공단개발자의 허가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허가받지 않은 '임대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임차한 공단부지를 제3자에게 직접 임대(실질적으로는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임차한 공단부지를 공단에 반환하고 공단에서 공단부지임대료로 지급했던 금액을 환불받는 방법인데, 공단입장에서는 직접 환불을 해주는 방법보다는 제3의 부지임차인을 찾아서 그로부터 환불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받아 환불해주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때문에 공단에서는 제3자 매도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 공단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2007년 계약 당시의 임차료와 2009년 현재 임차료의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는 지금 동일 면적의 공단부지를 임차할 수 없어서 공단으로부터 직접 환불받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고, 대신 제3자를 찾아 프리미엄을 받고 부지를 양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 측에서 제3자가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는 투자비용을 현실화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양도인에게는 프리미엄 수입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공단부지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동공단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증성 정부의 투자허가에 대한 기본적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 방안을 세워져 있는지 여부 포함), 해당공단 자체의 사업허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해당공단의 중앙폐수처리설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래야 동공단부지의 기존 공장 이전이 가능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증성의 경우 인민위원회 Decision 58(2008년10월16일)에 '빈증성내에서 권장되지 않는 사업(tanning, dying, producing basic chemicals, cleaning products, dying chemicals, printing inks, batteries, paper from raw materials and projects using a large number of unskilled workers)'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 한해 인민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장되지 않는 사업 list'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금지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빈증성내에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심사기관의 우려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관급공사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공사대금

1. 들어가며

통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급인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도급인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일이 흔합니다. 더구나 국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연대보증계약 체결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공사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무에 미치는데, 이런 시공의무 외에 나아가 선급금 반환채무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등 금전지급의무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의사는 도급계약상 피보증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이고 손해배상의무와 시공의무를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증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 등 금전배상의무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의 규정과 선급금 책임, 계약이행보증금 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대상 판결도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 공사도급 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보증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보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판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입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가 있었고,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책임 범위를 설시하면서, “관청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관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정부계약 유권해석상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금전책임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나오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상판결의 태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정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를 때, 분쟁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계약에서는 통상 계약 문언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서 금전채무를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계약해석을 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8. 20. 2009다36081 공사대금](#)

JS Horizon

(최신법령)

1.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7. 시행)

1.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업의 영업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7. 시행\)](#)

2.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등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7. 시행)

1.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의2를 신설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7. 시행)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규정 등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3호, 2009. 8. 7. 시행)

1. 2009. 2. 6.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외 대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 블로그,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63호, 2009. 8. 7. 시행)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보스톤창업투자컨소시엄 대리하여 한국자산신탁 인수 관련 법률자문 수행중

지평지성은 보스톤창업투자컨소시엄을 대리하여 한국자산신탁 인수 관련 본입찰 참가를 위한 예비실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김남연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합자회사 조선무약(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대리

지평지성은 합자회사 조선무약(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JS 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대표변호사, 일본 교토 리쓰메칸(立命館)대학 법학부 객원교수로 초빙 및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는 9월 1일부터 3주간 일본 교토의 리쓰메칸(立命館)대학 법학부의 객원교수로 초빙되어 일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관하여 15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관서민사소송법학회에도 참석하여 '2002년 한국의 민사소송법 개정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JS Horizon

금태섭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미국형사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가 9월 2일과 9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미국형사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S Horizon

최승수 변호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誌에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게재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의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에서 발행하는 '중재연구'誌 2009년 8월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JS Horizon

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해당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성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유치장 유치인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장 실태 조사 -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2009년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1소위 최경숙 위원장(상임위원), 김양원 위원(침해1소위 위원) 및 조사관들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실태 조사는 유치장 유치인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유치장의 시설 현황 및 유치인과 유치보호관들에 대한 면접을 통한 실태 조사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JS Horizon

황승화 변호사, 우리은행 초청 '부동산 PF의 법적 쟁점과 전망'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황승화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황승화 변호사는 2009년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우리은행 심사역전문가연구회 회원과 부동산 PF의 심사에 관심이 있는 여신본부 심사역 등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PF의 법적 쟁점과 전망'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무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Project Financing'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황승화 변호사, 우리은행 '부동산 PF의 법적 쟁점과 전망' 강의]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문성호 미국변호사
shmoon@js-horizon.com

□ 학력사항

-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MBA, 1987)
- 미국 U.C.L.A. School of Law 졸업 (J.D., 1998)
- UCLA School of Law, Visiting Jurist Program (2008)

□ 경력사항

- 삼성전자주식회사 근무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미국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국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문성호 미국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UCLA School of Law에서 Visiting Jurist 과정을 마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를 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지식을 보태어 떠나기 전 10년간 꾸준히 해 왔던 M&A, 외자유치, 해외투자, 합작사업, 국제금융, I.P. 라이선싱외 각종 국제계약 업무 등에 더욱 매진하여 고객님들께 더욱 필요하고 믿음이 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이경호 변호사
khlee@js-horizon.com

□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제49회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사항

-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AE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법무법인 은울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근무하게 된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9년 8월까지 법무법인 은울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자문, M&A 및 송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기획팀에서 일하면서 방송 및 신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지평지성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충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승이면서 친구 같고, 친구이면서 스승 같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지성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